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678 호 2011. 1. 24(월)

훈 령

○울산광역시북구훈령 제166호[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6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5

공 고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45호[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인)

2011년 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격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수지급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본 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상여금	정근수당	월 본급액의 100%	
수당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술수당	200,000원(시도사 : 350,000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정액급식비	월 300,000원	
	복 욕 비	월 50,000원	
	간 식 비	월 45,000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격 운동경기부의 보수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공통수당(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별표 1)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1 - 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준공)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10.12.31.	2011-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4-1	윤권용	울 산 광 역 시 북구 산하동 957-3번지선	3㎡	2011. 1. 1 ~ 2012. 12. 31.	종묘배양장 해수 취수용 관로설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1-2	울산 북구 당사동 521-1	김경용	북구 당사동 250-2 지선	336㎡	2011.1.1~ 2011.12.31	농수물종묘 및 미역관이고관용 창고 사용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3	울산 북구	이병규	북구 구유동 364 지선	90㎡ (D=100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4	울산 북구 당사동 523-1	권도석	북구 당사동 250-2 지선	156㎡	2011.1.1~ 2011.12.31	농작물 식재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5	울산 북구 신명동 151-13	빅할레	북구 신명동 151-13 지선	6.7㎡ (D=50mm)	2011.1.1~ 2011.12.31	농작물 식재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6	울산 북구 어물동 1338	이동형	북구 어물동 1335-3지선	46㎡	2011.1.1~ 2011.12.31	나무식재 (조경용)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7	울산 북구 정자동 637-10	김명곤	북구 산하동 966-2 지선	16㎡	2011.1.1~ 2011.12.31	상동펌프장 설치 1동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8	울산 북구 당사동 520-1	신진호	북구 당사동 250-2 지선	198㎡	2011.1.1~ 2011.12.31	농작물 경작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 9	울산 북구 정자동 637-10	김명곤	북구 산하동 966-2 지선	18.5㎡ (D=125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허가년월일	허가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관경)	점용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10.12.31.	2010-10	울산 북구 산하동 367-2	배관기	북구 산하동 367-2 지선	19.125㎡ (D=125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배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11	울산 북구 산하동 16-1	안몽식	북구 산하동 16-1 지선	18㎡ (D=150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12	울산 북구 정자동 637-5	김영득	북구 정자동 637-5 지선	12㎡ (D=100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13	울산 북구 산하동 941	신정환	북구 산하동 941 지선	15.25㎡ (D=225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배수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14	울산 북구 구유동 105	윤성천	북구 구유동 체전항 내	45㎡	2011.1.1~ 2011.12.31	전복 위성 보관장소	조건부 허 가
'10.12.31.	2010-15	울산 북구 산하동 4-1	최재용	북구 산하동 957-3 지선	12.75㎡ (D=125mm)	2011.1.1~ 2011.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수촉탁협약으로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가 확성화되었고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1)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용어 명확화**(안 제3조 제3호)**

(2)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1호)**

(3)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내상 규정 명확화**(인 제3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

(1) 포상금 환수이사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변경**(안 제8조 제3항)**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미련

(1)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신설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2)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264, FAX 219-72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재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2010.3.31, 법률 제10415호:2010. 12. 27)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 중 세무조사운영관련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지방세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등)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 7일 전에 ⇒ 10일 전에(안 제17조)

○ 세무조사기간 신설 : 규정없음 ⇒ 20일 이내(안 제18조)

○ 납세조력을 받을 권리 범위 구체화 : 변호사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령지도사 등(안 제23조 제2항)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호)

○ 별지 제1호, 3호, 5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219-7266,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